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및 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검 토 보 고 서

【 추 가 경 정 예 산 안 】

일 반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2025. 4.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I.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1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2
3.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5
(1) 총괄 현황	5
(2) 세부사업별 현황	6
II. 검토의견	9
[고용정책실]	9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	9
<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 설계 필요 >	12
(2)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 1045-350)	17
< 업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집행 필요 >	20
[청년고용정책관 · 통합고용정책국]	23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23
< 고용유지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28
(2) 중장년 인턴제(일반회계, 1336-305)	32
<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분석·평가 필요 >	35

[직업능력정책국]	37
(1)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고용보험기금, 1155-350)	37
< 차질없는 교육훈련 진행을 위한 면밀한 준비 필요 >	39
 [노동정책실]	44
(1)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44
< 대지급금 지급 이후 기금 재정건전성 고려 필요 >	46
(2) 생활안정자금(융자)(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51
< 대위변제 규모를 고려한 내실있는 융자 집행 필요 >	53
(3) 신용보증대위변제(근로복지진흥기금, 3064-308)	57
< 신용보증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60
 [산업안전보건본부]	63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60 - 350)	63
< 기존 융자를 받은 산재근로자와의 형평 문제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대처와 사업목표에 충실한 사업 집행 필요 >	64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와 통상환경 변화 등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필수소요 중심으로 12.2조원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야기함. 이에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둘째, 정부는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는 상황임. 이에 관세 피해·수출기업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할 계획임.

셋째, 정부는 내부 회복 지연으로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임.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금번 정부는 필수소요 중심으로 12.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 ①재해·재난 대응 3.2조원, ②통상·AI 지원 4.4조원, ③민생 지원 4.3조원, ④기타(국제행사, 국채이자 등) 0.2조원 편성함.

추가경정예산안 12.2조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해·재난 대응 관련하여, 금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및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4조원을,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1.7조원을,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를 위해 0.2조원을 편성함.

둘째, 통상·AI 지원 관련하여, 관세피해 관련 정책금융 25조원 확충 및 수출바우처 2배 이상 확대를 위해 2.1조원을, 고성능 GPU 1만장 확보 및 고급인재 양성 2배 확대 등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1.8조원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필수 인프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0.5조원을 편성함.

셋째, 민생 지원 관련하여,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크레딧 지원 및 정책자금 2.5조원 확충을 위해 2.6조원을, ‘상생페이백’ 신설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해 1.6조원을, 저소득 근로자 및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를 위해 0.2조원을 편성함.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총 12.2조원	
	◇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AI 대응,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주 요 내 용	①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1.4조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원
	② 통상 및 AI 지원	+4.4조원*
	▶ 통상리스트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원
	③ 민생 지원	+4.3조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④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

* 억원 단위로 산출한 규모(표에서 제시된 하부 카테고리(천억원 단위) 합과 일부 차이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조달 구조

구 분	비고
①가용재원 4.1조원 *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경재원 12.2조원
②추가 국채발행 8.1조원	

3.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총괄 현황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규모는 2,113억원으로, 본예산 35조 3,452억원의 0.6% 수준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97억원(0.6%)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00억(4.9%)이 증액 편성됨.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용보험기금은 154억원(0.1%) 증액,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66억원(0.07%) 증액, 임금채권보장기금은 819억원(13.0%), 근로복지진흥금은 478억원(23.9%) 증액 편성됨.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본예산	본예산 (A)	1회추경 증액분(B)	(B/A)
총지출(A+B)	336,825	353,452	2,113	0.6
▪ 예산지출(A)	58,151	57,549	597	1.0
- 일반회계	51,306	51,469	297	0.6
- 예특회계	896	866	-	-
- 지특회계	1,839	1,229	300	4.9
- 고특회계	4,111	3,985	-	-
▪ 기금지출(B)	278,674	295,903	1,516	0.5
- 고용보험	164,058	178,066	154	0.1
- 산재보험	98,222	100,176	66	0.07
- 장애인	9,053	9,372	-	-
- 임금채권	5,431	6,285	819	13.0
- 근로복지	1,908	2,004	478	23.9

(2) 세부사업별 현황

고용노동부는 ①통상·재난 대응, ②민생지원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

(단위: 억 원)

주요 내용	일반회계	지특회계	기금
통상·재난 대응 (+751억원)	①청년일자리창출지원 (+254억) ②중장년인턴제(+43억)	①지역산업맞춤형일 자리창출지원(+300억)	①고용유지지원금(+111억) ②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43억)
민생지원 (+1,362억원)	-	-	①대지급금지급(+819억) ②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66억) ③생활안정자금(융자) (+149억) ④신용보증대위변제 (+330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통상·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등 5개 사업에 751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산불·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둔화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고용둔화 대응 지원 예산 300억원을, ②관세에 따른 수출 주역산업 고용충격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1억원을, ③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대상 장려금을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용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위한 예산 254억원을, ④고용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

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폴리텍 맞춤형 훈련 지원 예산 43억원을, ⑤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이 유망한 자격·훈련 분야 실무경험 제공 확대를 위한 예산 43억원을 편성함.

둘째, 민생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1,362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체불 증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 819억원을, ②저소득근로자 대상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용자 확대를 위한 예산 149억원을, ③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66억원을, ④ 취약근로자들이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확대 예산 330억원을 증액 편성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증액 사업내역]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명	'25년		주 요 내 용
		본예산	추경안 (순증)	
-	합 계		+2,113	
	① 통상·재난 대응		+751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79	+300	▪ 고용둔화 대응 지원
2	고용유지지원금	703	+111	▪ 지원 확대(+6,000명)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772	+254	▪ 지원 확대(+7,000명) ▪ 청년 근속 인센티브 확대 (+6·12개월차, 각 120만원)
4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577	+43	▪ 지원 확대(+4,700명)
5	중장년인턴제	36	+43	▪ 지원 확대(+1,100명)
	② 민생 지원		+1,362	
6	대지급금지급	5,293	+819	▪ 지원 확대(+1만명)
7	생활안정자금융자	915	+149	▪ 지원 확대(+2,000명)
8	산재근로자생활 안정자금(융자)	143	+66	▪ 융자한도 상향(2→3천만원) ▪ 융자종류 확대 (자녀양육비 신설)
9	신용보증대위변제	317	+330	▪ 지원 확대(+330억)

II. 검토의견

[고용정책실]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006~, 자치단체 보조)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국비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사업임.¹⁾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총 5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지원대상 산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고용서비스 기반 구축, 취업 연계,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구성하여 지원받는 ①‘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원·하청간 상생 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임금·복지·훈련 등을 지원하는 ②‘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이 있음.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개요(지역자율선택산업 대상)]

구분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지원산업	지역전략 산업, 산업구조 전환지원 * 지역 자율 선택	지역 주력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 * 지역 자율 선택
지원대상	광역단체	광역단체 (기초단체 컨소시엄 참여가능)
지원 방식· 내용	신성장 산업 중심 고용서비스 기반 구축, 취업연계, 기업지원 등	원·하청 기업 수요가 반영된 패키지 지원 (임금·복지·훈련 등)
지원규모	광역단체별 40억원 한도	광역단체별 30억원 한도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중앙정부에서 선정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빈 일
자리로 인한 구인난 해소 대상 산업에 대해 직업훈련, 장려금 등 중앙
일자리사업과 연계·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③‘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
업’과, 울산·전북·전남·경남의 조선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원청·자치단
체·정부의 4자 공제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하는 ④‘조선업 재직자 희망공
제’ 사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석유화학업을 대상으로 원·하청 기업
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패키지 지원사업(직업훈련·장려금 등)을 지
원하는 ⑤‘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각각 추진 중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개요(특정산업 대상)]

구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지원산업	빈 일자리로 인한 구인난 해소 대상 산업 ²⁾ (중앙정부 제시)	조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석유화학업
지원대상	광역단체 (기초단체 컨소시엄 참여가능)	울산, 전북, 전남, 경남 ³⁾	광역단체 (기초단체 컨소시엄 참여가능)
지원 방식· 내용	직업훈련, 근로자·기업장려금 등 중앙일자리사업과 연계·추가(PLUS) 지원	근로자·원청·자치단체·정부 4자 공제금액 적립 (각 2년간 200만원 납입, 만기시 총 800만원 수령)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패키지 지원 (직업훈련·장려금 등)
지원규모	전국 284억원 한도	전국 229억원 한도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전국 100억원 한도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2025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1,078억 6,400만원 대비 300억원(27.8%) 증액된 1,378억 6,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6,292	105,796	107,864	137,864	30,000	27.8
· 자치단체지원	94,767	94,321	98,034	128,034	30,000	30.6
·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90	90	90	90	0	0.0
· 산업인자위 ¹⁾ 지원	11,040	11,040	9,345	9,345	0	0.0
· 운영비	395	346	395	395	0	0.0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자료: 고용노동부

2) ○ '24년 기 지원대상 업종(8개*)

* 조선업, 뿌리, 반도체, 농업, 여행관광업, 항공운수, 전문과학기술

○ 「1·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23.3월, '23.7월)」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구인난 업종(10개*)

*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 「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23.10월)」에 포함된 지역별 타겟업종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업종 및 기타 업종

3) 「조선업 상생협약(2023.2.27.)」 참여 5대 조선업 원청 소재 지역

〈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 설계 필요 〉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⁴⁾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 석유화학산업과 같이 특정 지역의 고용·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불황⁵⁾ 등으로 지역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정부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 300억원은 이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단위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8개 지자체에 각각 30~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음.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건설 등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거나 둔화되고 있는 업종의 지역일자리 창출·유지 지원을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주비·행복카드⁶⁾·건강검진비·교통비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사업지침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설계한 후 공모에 참여하면 심사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동 추경예산안 또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

4) 한국일보, “트럼프 ‘상호관세 폭탄’ 결국 발동… 무역 전쟁에 세계 경제 위기”, 2025.4.9.

5) 굿모닝경제, “여수·울산·대산 ‘삼중 위기’…석유화학 침체, 지역경제까지 흔들다”, 2025.4.11.

6) 기준 금액 내에서 의료, 자기개발, 문화, 여가 등을 위하여 사용

인바,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각 산업별·지역별 사업 설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의 악화 및 산업 전환에 따라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주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행복카드·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 근로자 안심 패키지’, 고용둔화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정주비·교통비·문화 및 여가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새출발 청년 희망 패키지’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바 각 자치단체들은 이를 참조하여 이와 유사한 사업을 설계·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예시]

구분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	위기 근로자 안심 패키지	새출발 청년 희망 패키지
지원 대상	해당 산업 악화, 사업장 폐쇄 및 산업 전환에 따라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고용둔화 업종에 취업한 청년
지원 패키지	①정주비 + ②교통비+ ③기타(이주비 등)	①건강검진비 + ②행복카드 + ③심리상담비 + ④기타	①정주비 + ②교통비 + ③문화·여가 활동비 + ④기타(자기개발비, 이주비 등) 또는 ①신규인력 채용장려금 + ②청년 신입직원 교육비 + ③교통비 + ④기타(이주비 등)
추가 지원	-	고용둔화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추가 지원으로 월최저임금 수준 보장	-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동 추경예산안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면밀한 사업 설계를 통해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추진 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5월 중 사업 공모 및 지원 대상지역 선정을 통해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4월 현재까지 지원 대상 산업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특히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사업 설계 과정이 필수적인바 고용노동부의 사업 예시에 따르더라도 공모 과정에서 사업 설계에도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격적인 사업 시작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데, 지역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동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을 감안할 때 사업의 적시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 업종 및 지역에 대한 계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 예산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형태의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고용 안정화라는 동 추경예산안의 목적에 부합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중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형태의 지원이 포함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대상 산업에는 고용노동부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원을 고려 중인 석유화학, 건설, 자동차 등의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대상 산업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고,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대상 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석유화학업인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이미 해당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⁷⁾

7)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 업종에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된 근로자(만 35~59세 이하)에 대해 취업일 기준 3~6개월 차에 각 100/30/30/4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또한 고용노동부는 동 추경예산안의 지원 대상 예시 중 하나로 ‘고용둔화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들고 있는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빈 일자리 업종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원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한정된 정부 재원의 제약 하에서 예산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타 사업을 통한 지원자 및 고용노동부의 다른 장려금 수령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지자체의 사업 공모 시에도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음.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신규 취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 중에 있고, 전라남도는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산업 업종 기업 근로자(만 35세~59세 이하)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 중임.

8)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2)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 1045-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고용유지지원금’(1995~, 직접수행) 사업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액 702억 5,500만원 대비 111억 1,300만원(15.8%) 증액된 813억 6,800만원원이 편성됨.

[2025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집행액	당초 (A)	제1회 변경안(B)		
■ 고용유지지원금	71,372	70,126	70,255	81,368	11,113	15.8
· 고용유지지원금	71,372	70,126	70,205	81,318	11,113	15.8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	-	50	50	0	0.0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⁹⁾에 근거하여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된 경우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휴직’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편,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직업안정기관 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여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9)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구 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유		①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 ③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①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③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고용유지 조치 이행조건	휴업	1개월 단위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후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및 휴업기간 평균임금 50% 미만 수당 지급 실시비율: ▲50% 이상 (19명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후 휴직수당 등 금품 지급	직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이상)을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30일 이상 휴직 실시 후 금품 미지급 실시비율: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지원수준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근로자별 지급)
		사업주 지급 수당 기준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또는 2/3* *단축률 50% 이상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사업주 지급 수당 기준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률 50% 이상	
지원한도 (기간)		일반업종	▲1일 6.6만원 (연 180일)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1일 7만원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업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집행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의 최근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났던 지원인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큰 폭으로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5년의 경우 3월 기준 계획액 중 약 20% 가량이 집행된 점을 볼 때 현재 추세로 집행되더라도 계획액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유지지원금 최근 집행 추이]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3.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유급휴업	234,751	113,127 (48.2)	64,544	190,850	125,843 (65.9)	44,136	70,223	70,053 (99.8)	35,291	70,105	15,093 (21.5)	8,488
유급휴직	312,650	307,833 (98.5)	59,616									
무급	49,500	42,842 (86.5)	12,954	6,370	959 (15.1)	599	1,149	72 (6.3)	31	100	123 (123.0)	31

* 주 : 2023년부터 유급휴업과 유급휴직 계획액을 통합하여 편성하였음.

**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한편,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요인이 발생하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바, 정부는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01억 6,500만원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9억 4,8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근거에 대하여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경기하방 우려 업종(화학제조, 자동차제조, 1차금속제조)에 대한 증액 편성으로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해당 업종 근로자수(2025.3. 기준 약 77만명)에 2020년 고용위기시 전체 취업자 수 감소율

약 0.8%를 고려하여 5,750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예상하여 편성하였고,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2024년 이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 인원인 250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고용유지지원금 편성 근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0,165백만원 = ①5,750명×②854천원×③2.07개월 ① 5,750명: 미국 관세부과, 경기하방 우려 업종(화학제조, 자동차제조, 1차금속제조) '25.3월 기준 근로자수(약 77만명)에 '20년 초 고용위기시 전체 취업자수 감소율(약 0.8%) 고려 ② 854천원: '25년 평균 지원단가 적용(가장 최근 단가로 설정) ③ 2.07개월: '24년 평균 지원기간 적용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948백만원 = ①250명×②1,476천원×③2.57개월 ① 250명: '24년 이후 무급 지원 실적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 반영 ② 1,476천원: '25년 평균 지원단가 적용(가장 최근 단가로 설정) ③ 2.57개월: 고용위기시인 '20년 평균 지원기간 적용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사업장의 경영악화를 전제로 집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경기 하방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일시적 경제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유급)·30%(무급)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2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제충격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금계획안 집행 시 해당 업종·지역 경

제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요건의 설정 및 적용¹⁰⁾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현행 제도 상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¹¹⁾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의 수준 및 지원 한도 등이 높으므로, 경기침체로 특정 업종 또는 지역의 경제사정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업종 및 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음.

1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②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 내 고용 규모 또는 비중이 높은 주된 사업주의 고용위기로 인해 관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재난 발생에 직접적이거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주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청년고용정책관 · 통합고용정책국]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2022년~, 직접)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¹²⁾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¹³⁾을 근거로 함.

동 사업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7,771억 8,100만원 대비 254억 1,600만원(3.3%) 증액된 8,025억 9,700만원이 편성됨.

12)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680	537,609	777,181	802,597	25,416	3.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7,780	487,003	777,181	802,597	25,416	3.3
· 빈일자리창출취업지원금	49,900	50,606				

*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2~2024년) 시행했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¹⁴⁾

2025년부터는 지원대상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유형 I)과 빈일자리 업종¹⁵⁾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유형 II)으로 구분하였음.

14)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한시사업(2022~2024년)으로 실시한 바 있음.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업종	지원대상청년	지원기간	사업주지원(청년1인당)	목표인원	예산
모든 업종	취업애로청년	2년	1,200만원 = 720만원(60만원/월, 1년) + 2년차 480만원	12.5만명	6,078억원

15)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형 I 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애로청년¹⁶⁾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¹⁷⁾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유형 II는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18·24개월차 각 24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¹⁸⁾

동 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총 254억 1,600만원(3.3%) 증액되었는데, ①기업지원금 85억 7,200만원, ②청년 근속인센티브 159억 8,600만원, ③민간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음.

16)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17)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18)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한시사업으로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지원기간 및 수준) 취업지원금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급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본예산 대비 추경안 비교표]

구분	'25년 본예산		'25년 추경안	
유형	I유형	II유형	I유형	II유형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좌동	
지원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지원기간	1년	2년 (사업주 1년/청년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720만원 (60만원/월, 총 1년)		⇒	
청년 지원금	-	480만원 (240만원/각 18·24개월차)		
목표인원	55,000명	45,000명	58,850명	48,150명
예산	7,772억원		8,026억원(3.3% ↑)	

* 자료: 고용노동부

①기업지원금은 기업 지원물량이 유형 I의 경우 본예산(55,000명) 대비 3,850명, 유형 II의 경우 본예산(45,000명) 대비 3,150명 확대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월별 채용인원¹⁹⁾, 고용유지율²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기업지원금 : ('25) 751,031백만원 → ('25추경) 759,603백만원, 8,572백만원 증액 - 산출: 유형1 3,850명, 유형2 3,150명 물량 증대 <월별 계산(청년마다 지급 시기 상이) 후 합산> (유형1) 700,643백만원 <기존 채용자('23년, '24년 채용자 계속지원분)+'25년 신규 지원분> a. 기존 채용자 계속지원분 628,581백만원 b. '25년 신규 기업지원금 72,062백만원(4,715백만원 증액) ↳ (58,85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지원단가(월 60만원) × 근속기간(월) = 72,062백만원 * ▲고용유지율(6개월: 0.83, 9개월: 0.73) ▲12개월 근속 시 지원금은 차년도 집행 (유형2) 58,960백만원 <'25년 신규 지원분> '25년 신규 기업지원금 58,960백만원(3,857백만원 증액) ↳ (48,15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지원단가(월 60만원) × 근속기간(월) = 58,960백만원 * ▲고용유지율(6개월: 0.83, 9개월: 0.73) ▲12개월 근속 시 지원금은 차년도 집행
--

19) '25년의 경우 채용목표인원을 12개월로 균등분배

20)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고용유지율 반영

②청년 근속인센티브의 경우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근속기간 18개월·24개월차에 지급됨에 따라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6개월·12개월차에도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되어 6개월 근속 인센티브 지급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증액된 것임.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② 청년 근속인센티브: ('25) 0 → ('25추경) 15,986백만원, **15,986백만원 증액**
 - 산출: 유형2 3,150명 물량 증대 6개월 근속인센티브 지급 <월별 계산(청년마다 지급 시기 상이) 후 합산>
 (유형2) 청년 근속인센티브 6·12개월 각 120만원 지급(**15,986백만원 증액**)
 $\hookrightarrow (48,150\text{명}/12\text{개월}) \times \text{고용유지율}^* \times 120\text{만원} = 15.986\text{백만원}$
 $* \blacktriangle \text{고용유지율}(6\text{개월}: 0.83) \blacktriangle 12\text{개월 근속인센티브는 차년도 집행}$

③민간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²¹⁾을 만족한 청년 1인당 운영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유형 I 은 청년 1인당 20만원, 유형 II는 청년 1인당 30만원이 지급됨.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지원 인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③ 민간위탁사업비: ('25) 24,750백만원 → 25,608백만원, **858백만원 증액**
 - 산출: 유형 1 20만원, 유형 2 30만원 지급
 (유형1) 18,385백만원(**385백만원 증액**)
 '24년도 사업 기지원: '24년도 12.5만명 $\times$ 20만원 $\times$ 0.5 = 12,500백만원
 '25년도 신규 지원: '25년도 **5.885만명** $\times$ 20만원 $\times$ 0.5²²⁾ = 5,885백만원(**385백만원 증액**)
 (유형2) 7,223백만원(**473백만원 증액**)
 '25년도 신규 지원: '25년도 **4.815만명** $\times$ 30만원 $\times$ 0.5 = 7,223백만원(**473백만원 증액**)

21) (유형 I)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6개월분) 지원금 지급시 20만원

(유형 II)* 기업지원금 조건: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6개월분) 지원금 지급시 20만원

*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조건: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8개월 근속하여 1차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시 10만원

22) '25년 상반기에 1회, '26년 상반기에 1회 위탁사업비의 50%씩 분할 지급하되, 사업 종료 후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

〈 고용유지를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20대 후반 인구의 취업자 수가 경기 위축과 일자리 감소,²³⁾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들면서, 청년층 고용 상황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²⁴⁾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학업 활동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 3월 기준 45만5천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²⁵⁾ 중소기업 특히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는 인력난이 심화되어 청년 유인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²⁶⁾

[300인 미만 업체 빈일자리 통계]

(단위: 천개, %)

구 분		‘24.10	‘24.11	‘24.12	‘25.1	‘25.2
빈일자리수 (율)	전체	168(1.1)	159(1.0)	165(1.1)	155(1.0)	159(1.0)
	제조업	43(1.4)	41(1.4)	41(1.4)	38(1.3)	36(1.2)

* 빈일자리: 조사기준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 빈일자리율: 빈일자리수 / (빈일자리수+종사자수)*100

*** 자료: KOSIS 통계자료, 통계청, '25.2월

- 23) '25.3월 기준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0.32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기록(고용노동부)
- 24)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사회 초년생인 25~29세 취업자 수는 2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2013년 3분기(-10.3만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알바자리도 씨가 말랐어요”...직격탄 맞은 청년구직자 ‘비명’, 한국경제,2025.4.15.)
- 25) ▲청년고용률은 44.5%(-1.4%p)로 11개월 연속 감소, 실업률은 7.5%(+1.0%p)로 상승세
 ▲쉬었음 청년은 '22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
 → ('21)41.5 ('22)42.3 ('23)40.8 ('24)40.3 ('25)45.5 (3월 기준, 단위: 만명) <'25.3월, 통계청>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평균 취업 소요 기간: 11.5개월<'24.5월, 통계청>
- 26) 인력부족률(%): 300인 미만 사업장 3.0 vs 300인 이상 1.5<24,12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이처럼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따라서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과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지원 물량 확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동 사업의 2024년 집행현황을 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현 유형 I) 사업에서 기업지원금 1,192억 5,500만원(예산현액 대비 20.14%)이 불용되었음.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현 유형 I)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불용액 (율)
기업지원금(310-04)	592,380	473,125	79.87	119,255 (20.14)

* 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불용액 발생 사유는 전년도 채용자의 고용유지율이 예산 추계 당시 고려한 고용유지율보다 약 10% 정도 낮아졌기 때문인데,²⁷⁾

27) 2024년 사업예산 편성시 반영한 고용유지율은 2021년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17.8월~'21년) 사업의 고용유지율로, 두 사업간 참여자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어 고용유지율에 차이가 발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로 하여금 청년을 채용한 후 10일 이내 채용자명단을 제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개월 고용유지 후 재직중인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

2025년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변경된 고용유지율을 반영하였으므로,²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사업예산의 실행행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임.

다만, 2022년과 2023년 동 사업의 고용유지율을 보면 1년 근속을 채우는 청년의 비율이 각각 68%, 67%로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최근 경기 부진,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청년도약장려금 사업 고용유지율]

개월		6	7	8	9	10	11	12	18	24
청년도약장려금	'22년	0.83	0.78	0.75	0.73	0.71	0.69	0.68	0.43	0.40
	'23년	0.83	0.80	0.77	0.75	0.72	0.70	0.67	-	-

* ▲도약장려금 고용유지율은 수작업한 결과로 추후 변동 가능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참여 청년의 경력 생성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동 사업의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을 근로환경 개선, 직원 복지 증진에 쓰이도록 하는 등 제도 홍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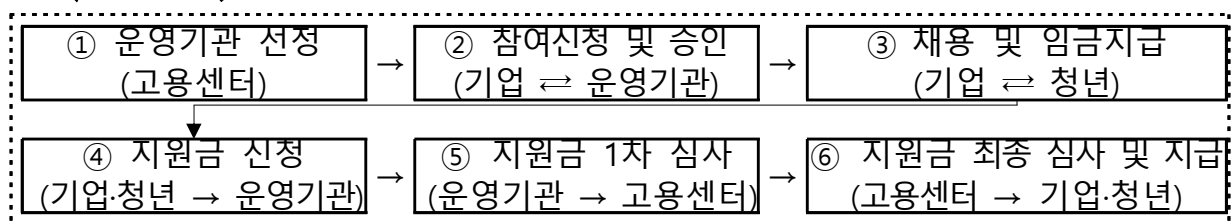
28) '25년 예산 추계 시 6~12개월 차는 '22년 청년도약장려금 사업 고용유지율, 24개월 차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고용유지율 반영

참고

'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개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함.
 - **(유형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유형2)**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유형1)**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근로자가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의 일정기간 근무 후 지원금 지급



(2) 중장년 인턴제(일반회계, 1336-305)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중장년 인턴제’ 사업(2025년~, 직접)은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²⁹⁾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³⁰⁾를 근거로 함.

동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역사업인 일경험프로그램 중 중장년층 지원대상 사업이 이관되어 온 것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6억 4,000만원 대비 42억 9,000만원(117.9%) 증액된 79억 3,000만원이 편성됨.

29)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25년도 중장년 인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중장년인턴제			3,640	7,930	4,290	117.9

* 자료: 고용노동부

중장년 인턴제는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 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을 선정하여, 참여기업³¹⁾에서 제공하는 1~3개월 간의 유망 자격·훈련 분야³²⁾ 실무수행, 직무교육,³³⁾ 멘토링 등을 연계하는 것으로,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이, 참여기업에게는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수당이 지원됨.

동 사업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면, 각 권역별 고용센터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영기관(민간위탁사업자)³⁴⁾이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발굴·모집하고, 이에 대해 각 권역별 고용센터는 참여자 요건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이후 운영기관은 선정된 지원자를 참여기업과 매칭하여 일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점검 등

3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단,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5인 이상 기업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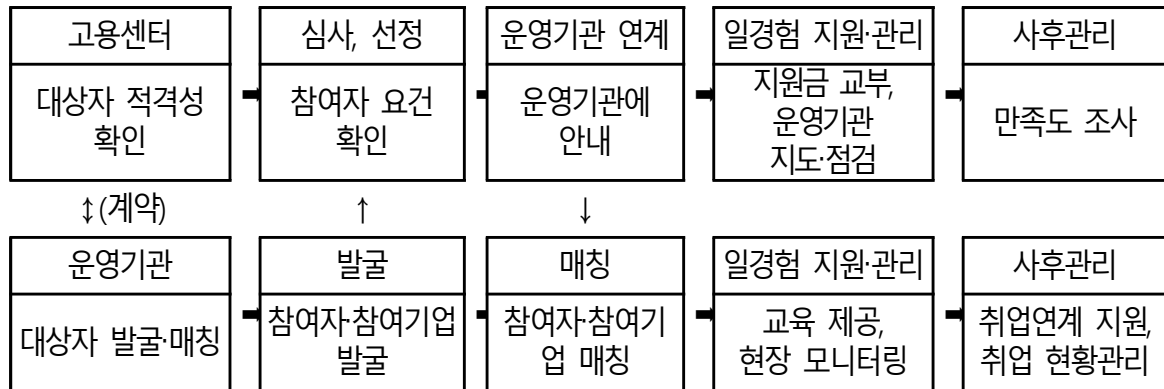
32)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

33) 소양·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34) (위탁내용) 참여자 발굴·홍보 및 참여기업 발굴·모집, 참여자 상담, 참여기업-참여자 연계·선발·관리, 교육 대행, 일경험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점검 등 사업 운영 및 사후 관리

을 수행하며, 고용센터는 지원금 교부, 운영기관 지도·점검 등을 수행함.

[중장년 인턴제 지원 프로세스]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총 42억 9,000만원(117.9%) 증액되었는데, 중장년 지원인원 확대(910명→2,000명)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①참여자 수당 31억 3,900만원, ②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8억 3,700만원, ③민간위탁사업비 1억 4,400만원, ④운영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중장년 인턴제 사업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산출근거]

① 중장년 인턴제: ('25) 3,640백만원 → ('25추경) 7,930백만원, **4,290백만원 증액**

- (요구)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하고 자격취득, 훈련 이수 후에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50대 중장년 1,090명 추가 지원에 대한 소요액

- (산출) • 참여자 수당 2,621백만원(2025년 본예산) → 5,760백만원(**3,139백만원 증액**)

150만원(지원단가) × 910명(지원인원) × 2.4개월(지원기간) × 0.8(금년도 지급분)
+150만원(지원단가) × 1,090명(추가인원) × 2.4개월(지원기간) × 0.8(금년도 지급분)

• 프로그램 운영 수당 699백만원(2025년 본예산) → 1,536백만원(**837백만원 증액**)

40만원(지원단가) × 910명(지원인원) × 2.4개월(지원기간) × 0.8(금년도 지급분)
+40만원(지원단가) × 1,090명(추가인원) × 2.4개월(지원기간) × 0.8(금년도 지급분)

- 위탁기관 기본금 91백만원(2025년 본예산) → 200백만원(**109백만원 증액**)
10만원(지원단가) × 910명(지원인원)
+10만원(지원단가) × 1,090명(추가인원)
- 위탁기관 과정 관리비 29백만원(2025년 본예산) → 64백만원(**35백만원 증액**)
5만원(지원단가) × 910명(지원인원) × 0.8(2개월이상비율) × 0.8(수료율)
+5만원(지원단가) × 1,090명(추가인원) × 0.8(2개월이상비율) × 0.8(수료율)
- 수용비 등 사업운영비 200백만원(2025년 본예산) → 370백만원(**170백만원 증액**)
일반수용비 50 + 공공요금및제세 50 + 일반용역비 50 + 사업 출연금 50
+일반수용비 100 + 일반용역비 70

〈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분석·평가 필요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 전환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위기 극복 필요, 50대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의 지속적 하락 추세에 따라 중장년 고용 불안정 완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이·전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경기침체, 산업 전환 및 조기은퇴에 따른 실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확대는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전신인 일경험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사업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어 사업의 효과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³⁵⁾

이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기

35) 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는 세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①국민취업제도 I 유형, ②국민취업제도 II 유형, ③일경험프로그램), 일경험프로그램의 경우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지표는 관리하지 않음.

(참고) 국민취업제도 I·II 유형: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평가 없이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동 사업이 시범사업임을 확인하고, 2025년 중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6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³⁶⁾

동 사업은 예산의 대부분이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참여자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가 중장년만을 대상으로 독립된 사업을 편성·운영하는 첫 해인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25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시작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참여신청자 320명·참여신청 기업 95개소³⁷⁾로 일경험에 대한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동시에, 중장년층의 직무능력 향상, 재취업률 제고 등 중장년 인턴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효과를 보다 면밀히 측정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³⁸⁾

36) 제418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11.14.)

37) 현재 참여자 및 참여기업 신청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월 평균 320명에 대해 8개월 간 사업 수행 시 2,000명 이상의 수요가 예측(‘25. 3. 4.부터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38) 현재 소관부서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성과지표 방안 마련 중(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1)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고용보험기금, 1155-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사업(1998년~, 출연)은 국가 기간·전략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장려금, 전문기술과정 등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액 576억 8,900만원 대비 42억 7,200만원(7.4%) 증액된 619억 6,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집행액	계획액	제1회 변경안(B)		
■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55,226	54,678	57,689	61,961	4,272	7.4
· 신중년특화과정	4,932	4,932	5,532	9,189	3,657	66.1
· 훈련장려금	4,163	3,860	4,284	4,899	615	14.4
· 전문기술과정	8,328	8,328	7,287	-	-	-
· 하이테크과정	10,150	10,150	12,150	-	-	-
· 기능장과정	625	625	603	-	-	-
· 소규모사업장훈련	1,113	1,113	1,270	-	-	-

· 여성재취업훈련	4,756	4,756	4,756	-	-	-
· 교육훈련과정운영	1,544	1,544	1,488	-	-	-
·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2,419	2,419	2,419	-	-	-
· 교육훈련직종개발	296	296	-	-	-	-
· 신기술장비확충	11,700	11,700	11,700	-	-	-
· 학과신설 및 개편	3,000	3,000	4,000	-	-	-
· ~~아주배경구작자작업~~ 훈련	2,200	1,955	2,200	-	-	-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신중년특화과정과 훈련장려금은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0세 이상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교통비 등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신중년특화과정은 3개월의 단기과정과 6개월의 장기과정으로 구분되며, 동 내역사업은 신중년특화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등의 훈련비로 지출됨.

훈련장려금은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소정훈련일수 중 80% 이상 출석한 훈련생에게 교통비 및 훈련수당을 출석일수 등에 따라 월 최대 11만 6천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신중년특화과정과 훈련장려금의 개요]

구 분		내 용	
목 적		▪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 직종 맞춤 기술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 및 취업을 지원	
대 상		▪ 40세 이상의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종 류		▪ 단기: 3개월 과정 ▪ 장기: 6개월 과정	
교육과정		▪ 단기: 산업안전과정, ICT기술영업, 인공지능 서비스기획, 전기설비실무 등 ▪ 장기: 미래형자동차, 지능형에너지설비, 기계시스템, 에너지산업설비 등	
지원 내용	훈련비	▪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등 전액 지원	
	훈련장려금	▪ 요건: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단위기간 출석률 = $\frac{\text{단위기간 출석(인정)일수}}{\text{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 \times 100$	
		▪ 지급액: 월 11만 6천원 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월 25만원 限) ① 기본장려금(교통비) 월 5만원 限 - 출석일수×2,500원	
		② 추가장려금(훈련수당) 월 6만 6천원 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0만원 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출석일수×10,000원 (월 20만원 상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출석일수×10,000원 (월 20만원 상한)		
그 외 훈련생	출석일수×3,300원 (월 66,000원 상한)		

〈 차질없는 교육훈련 진행을 위한 면밀한 준비 필요 〉

신중년특화과정(단기)은 2025년도에 1,45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중년특화과정(훈련비) 19억 3,300만원, 훈련장려금이 2억 8,476만원 편성되었으나,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4,70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신중년특화과정(훈련비)이 36억 5,700만원, 훈련장려금이 6억 1,534만원 증액 편성됨.

[신중년특화과정(단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 내역]

구 분		목표인원	산출 단가
훈련비	당 초	1,450명	19억 3,300만원 = 1,450명×1.333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150명 (+4,700명)	55억 8,700만원 (+36억 5,700만원) = 1,450명×1.333백만원 +4,700명×0.778백만원
훈련장려금	당 초	1,450명	2억 8,476만원 = $\frac{1,450\text{명}}{\text{훈련인원}} \times \frac{3\text{개월}}{\text{교육기간}} \times \frac{116\text{천원}}{\text{훈련장려금액}} \times \frac{87.1\%}{\text{수료율}} \times \frac{64.79\%}{\text{지급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150명 (+4,700명)	9억 1만원 (+6억 1,534만원) = $\frac{1,450\text{명}}{\text{훈련인원}} \times \frac{3\text{개월}}{\text{교육기간}} \times \frac{116\text{천원}}{\text{훈련장려금액}} \times \frac{87.1\%}{\text{수료율}} \times \frac{64.79\%}{\text{지급률}}$ + $\frac{4,700\text{명}}{\text{훈련인원}} \times \frac{2\text{개월}}{\text{교육기간}} \times \frac{116\text{천원}}{\text{훈련장려금액}} \times \frac{87.1\%}{\text{수료율}} \times \frac{64.79\%}{\text{지급률}}$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평균 240시간 3개월간의 훈련과정을 제공할 계획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이보다 더 짧은 평균 140시간 1~2개월의 훈련과정을 공급할 계획임.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훈련 기간을 단축한 이유에 대해, 장기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통해 이·전직을 준비하려는 신중년의 단기과정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함.

목표 훈련 인원 증대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경기 악화가 예상되고, 950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 은퇴기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역량 강화 및 이·전직 지원을 위해 캠퍼스별 추가로 수용 가능한 훈련 인원 4,700명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

다음 두 표와 같이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의 훈련생이 전체 훈련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2~2024년 동안 78.1%, 76.3%, 77.4%로 매년 70% 이상이라는 점과 신중년특화과정의 경쟁률이 같은 기간 2.9:1, 2.3:1, 2.7:1로 매년 2:1 이상이라는 점에서 훈련 인원 증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봄.

[2022~2024년 신중년특화과정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연령대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40~44	208	8.3	264	10.2	266	10.1
45~49	342	13.6	349	13.5	331	12.5
50세 이상	1,962	78.1	1,975	76.3	2,043	77.4
50~54	457	18.2	512	19.8	587	22.2
55~59	521	20.7	537	20.7	554	21.0
60세 이상	984	39.2	926	35.8	902	34.2
전체	2,512	100	2,588	100	2,640	100

* 자료: 고용노동부

[2022~2024년 신중년특화과정의 캠퍼스별 경쟁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캠퍼스	2022			2023			2024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전체	2,500	5,236	2.9:1	2,500	5,701	2.3:1	2,550	6,751	2.7:1
서울정수	180	459	2.3:1	200	434	2.2:1	250	760	3:1
서울강서	240	830	3.5:1	220	736	3.3:1	220	979	4.5:1
성남	170	362	2.1:1	130	399	3.1:1	130	470	3.6:1
제주	40	124	3.1:1	40	145	3.6:1	40	152	3.8:1

인천	80	178	2.1:1	80	195	2.4:1	80	220	2.8:1
남인천	180	381	2.1:1	180	522	2.9:1	160	477	3:1
화성	90	178	2:1	90	227	2.5:1	110	298	2.7:1
춘천	40	54	1.4:1	60	125	2.1:1	60	153	2.6:1
원주	40	92	2.3:1	40	55	1.4:1	40	73	1.8:1
강릉	70	182	2.6:1	70	145	2.1:1	70	197	2.8:1
대전	100	194	1.9:1	150	230	1.5:1	150	354	2.4:1
청주	40	171	4.3:1	40	140	3.5:1	40	210	5.3:1
아산	40	58	1.5:1	40	66	1.7:1	40	57	1.4:1
충남	50	91	1.8:1	50	80	1.6:1	50	122	2.4:1
충주	20	37	1.9:1	40	103	2.6:1	40	95	2.4:1
광주	60	88	1.5:1	60	139	2.3:1	60	168	2.8:1
전북	40	64	1.6:1	40	56	1.4:1	40	87	2.2:1
전남	50	60	1.2:1	50	83	1.7:1	50	64	1.3:1
익산	90	117	1.3:1	90	147	1.6:1	90	175	1.9:1
순천	70	110	1.6:1	70	114	1.6:1	70	137	2:1
대구	50	74	1.5:1	50	79	1.6:1	50	110	2.2:1
구미	60	97	1.6:1	60	122	2:1	60	134	2.2:1
남대	40	64	1.6:1	40	68	1.7:1	40	71	1.8:1
포항	40	75	1.9:1	40	78	2:1	40	103	2.6:1
영주	40	69	1.7:1	40	51	1.3:1	40	59	1.5:1
영남융합기술	50	89	1.8:1	50	105	2.1:1	50	111	2.2:1
창원	60	137	2.3:1	80	204	2.6:1	80	165	2.1:1
부산	60	172	2.9:1	60	243	4.1:1	60	136	2.3:1
울산	150	219	1.5:1	150	228	1.5:1	150	262	1.7:1
동부산	50	104	2.1:1	50	141	2.8:1	50	120	2.4:1
진주	60	100	1.7:1	40	91	2.3:1	40	75	1.9:1
바이오	40	34	0.8:1	20	27	1.4:1	20	29	1.5:1
항공	40	63	1.6:1	40	82	2.1:1	20	30	1.5:1
반도체	20	23	1.2:1	20	26	1.3:1	40	81	2:1
로봇	-	-	-	-	-	-	20	17	0.9:1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고용노동부는 면밀한 준비를 통해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전국 캠퍼스별로 운영할 수 있는 훈련과정과 수용 가능한 훈련 규모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추가 과정을 개설하겠다는 입장임.

그런데 신중년특화과정은 이론이 아닌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이므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수용할 수 있는 훈련생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라 추가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은 7개월 남짓에 불과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존 1,450명 외에 현행 모집 인원의 3배 수준인 4,700명의 훈련생을 추가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수진 확보, 훈련장소·장비 확충 및 훈련생 모집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음.

[노동정책실]

(1)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대지급금 지급’(1998년~, 직접, 출연)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예산 5,293억 4,600만원 대비 818억 5,100만원(15.5%) 증액된 6,111억 9,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지급금 지급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집행액	당초 (A)	제1회 변경안(B)		
■ 대지급금 지급	474,733	727,203	529,346	611,197	81,851	15.5
· 대지급금 지급	472,550	724,207	526,403	608,254	81,851	15.5
· 채권관리비용	2,183	2,992	2,943	2,943	-	-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818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이는 임금체불 증가 추세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수요 증가로 2025년 1분기에 간이대지급금 1,587억 5,100만원(32.8%)을 기집행하여, 해당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예산 소요

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 소요액이 5,659억 8,700만원³⁹⁾임에 따라 2025년 당초 계획액 4,841억 3,600만원보다 부족한 818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①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②기업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됨.

[대지급금 제도 개요]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재직자
지급 사유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 지방관서의 도산등사실 인정		▶ 법원의 확정판결 ▶ 지방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지급요건	대상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 (확정판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3개월간 통상지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39) 2025년 연간 예상 지급 근로자수 109,308명*, 1인당 단가 5,179,913원(최근 3년 평균단가)**
 * (27,328명(2025년 3월 지급 근로자수) ÷ 3개월) × 12개월
 ** 최근 3년 단가: (2024년) 5,540,666원, (2023년) 5,129,012원 (2022년) 4,864,060원
 → 연간 지급 예상액: 565,987백만원(109,308명 × 5,179,913원)

사업 주 기 준	① 산재보험 적용 사업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②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지급 범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 한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총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700만원
청 구 기 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횟 수 제 한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자료: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지급 이후 기금 재정건전성 고려 필요 〉

2019년부터 2024년의 임금체불액 규모와 대지급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 7,217억원에서 2024년 2조 448억원으로 3,231억원(18.8%) 증가하였고,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9년 4,599억원에서 2024년 7,242억원으로 2,643억원(57.5%) 증가하였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임금체불액이 급증하며 대지급금 지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19년~2024년 체불규모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임금체불액	1,721,703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2,044,848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도산대지급금	168,789	109,975	79,360	36,576	39,635	54,828
간이대지급금	291,090	469,715	467,210	500,288	647,271	669,379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미 관세정책 여파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지속 및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규모 증가가 우려되고,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에 비해 지급 수요가 증가하여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크므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임금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액의 추이를 볼 때,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계획액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대지급금 지급은 법정의무지출에 해당되고,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2023년 이후 대지급금 지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3년 1,277억 7,300만원, 2024년 2,516억 5,700만원이 자체변경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동 사업 계획액 증액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3~2024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3.10.26.)	대지급금 지급	310	04	127,773	금리인상의 영향과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사정 악화로 체불신 고액 증가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증가로 소요재원 마련
자체변경 (‘24.6.19.)	대지급금 지급	310	04	221,635	임금채불 증가 등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수요 증가
자체변경 (‘24.11.15.)	대지급금 지급	310	04	30,022	임금채불 증가 등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수요 증가

그런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대지급금 지급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818억 5,100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금의 여유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을 고려하면 추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기금 적립금은 2019년 9,588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 3,473억원으로 감소(△63.8%)하였는데 이는 대지급금 지출액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던 것에 기인함. 이러한 기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에는 자금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입금 570억원이 수입액으로 편성되어 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A)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지출(B)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사업비지출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7,198
수지차 (A-B)	△30,761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여유자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4,576

주1)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주2)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대지급금 환수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총수입의 주요한 수입원에 해당하는데, 대지급금 환수 추이를 보면, 최근 누적 대지급금 환수율은 30% 내외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지급금 지급액의 증가에도 환수율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지급금 환수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해연도 대지급금지급분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당해연도 대지급금환수분	114,216	122,483	148,248	153,240	148,132	158,228
누적 대지급금지급분(A)	4,574,052	5,153,742	5,700,313	6,237,177	6,924,083	7,648,290
누적 대지급금환수분(B)	1,567,381	1,689,864	1,838,112	1,991,353	2,139,485	2,297,713
누적 환수율(B/A)	34.3	32.8	32.2	31.9	30.9	30.0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증액을 통해 증가 추세인 대지급금 수요를 충당하면서도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변제금 미납사업주 재산 발굴 및 추심강화·신용제재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생활안정자금(용자)(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생활안정자금(용자)’(1996년~, 용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필수자금 용자를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용자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예산 914억 6,200만원 대비 148억 8,000만원(16.3%) 증액된 1,063억 4,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생활안정자금(용자)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집행액	당초 (A)	제1회 변경안(B)		
■ 생활안정자금(용자)	88,462	118,462	91,462	106,342	14,880	16.3
· 생활안정자금(용자)	88,462	98,286	88,462	103,342	14,880	16.8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	-	3,000	3,000	-	-

* 자료: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특고, 1인 자영업자 포함)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총 6종의 용자가 가능함.

각 용자의 금리는 연 1.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52만 이하(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구 분		대 상 및 조 건
융 자 대 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노부모부양비 ⑤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5년 252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⑥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휴업·휴직(경영상 이유, 개인 사정),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5년 252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융 자 한 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 1,000만원
	②혼례비	• 1,250만원
	④노부모부양비	• 2천만원 한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⑤자녀양육비	• 2천만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7세미만 자녀)
	⑥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료: 고용노동부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 국회 확정(2024년 12월 10일) 이후 2024년 12월 26일 ① 자녀학자금 융자 폐지 ② 기존 부모요양비 융자의 '노부모부양비' 융자로의 전환 및 융자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 ③ 자녀양육비 융자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고시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였고 2025년 1월 6일 융자 내용을 변경하였음.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규모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148억 8,000만원의 사업비 증액을 통해 2025년 2~3월 융자 지원 평균단가인 620만원⁴⁰⁾ 기준 약 2,400명에 대한 추가 융자 지원

40) 620만원=2025년 2~3월 지원액 173억 2,300만원 ÷ 지원인원 2,816명

41) 고용노동부는 2024.5월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예산을 증액(300억원, 2024.7월)하고 월별 분할 운영하였으나, 연내 융자 수요 대비 예산부족으로 접수를 하지 못한 융자신청 건이 2025년 사업개시월인 1월에 집중되며 실적에 극단적인 변동 발생하여 2025.1월 실적은 평균단가 산정에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대위변제 규모를 고려한 내실있는 용자 집행 필요 〉

연도별·종목별 용자 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을 통해 평균 29,826명의 근로자가 1,714억 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음. 2024년의 경우, 총 20,306명의 근로자가 1,182억 3,400만원의 용자 지원을 받았음.

[2020~2024년 용자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31,743	206,647	24,801	143,946	41,639	223,170	30,639	165,030	20,306	118,234
의료비	5,702	23,862	4,571	18,469	4,529	17,987	5,966	21,291	3,688	13,495
혼례비	5,387	65,285	3,578	43,236	3,493	42,342	4,327	52,772	4,077	49,872
장례비	442	4,161	279	2,570	292	2,621	355	3,220	196	1,751
부모 요양비	2,637	12,410	1,892	8,843	1,894	8,684	2,393	10,593	1,451	6,274
자녀 학자금	6,244	30,633	4,100	19,883	3,915	18,790	4,985	23,655	3,359	15,870
자녀 양육비	-	-	6,022	29,806	7,233	35,331	9,864	46,677	6,129	28,094
임금감소 생계비	3,212	28,343	1,011	8,715	329	1,457	439	2,355	67	294
소액생계 비	4,259	18,265	2,306	5,242	1,924	3,792	2,310	4,467	1,339	2,584
임금채불	3,860	23,688	1,042	7,182	-	-	-	-	-	-

서 제외하고 2~3월(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산정하였다고 설명함.(2025.1월 지원실적 17,550백만원, 2,999명)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생계비										
생계 지원비	-	-	-	-	18,030	92,166	-	-	-	-

* 고용 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용자 사업 운영비 2,794백만 원 제외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의 경우, 최근 경기 둔화, 내수 침체의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에 대한 취약계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25년 3월 말 기준 당초 계획액 914억 6,200만원의 39.0%인 356억 8,300만원이 기집행되었음.

[2025년 3월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용자) 종목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 생계비	합계
인원	1,260	1,115	62	618	2,254	336	5,945
금액	5,974	13,575	550	2,825	12,105	654	35,683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용자의 집행현황을 볼 때,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용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은 취약계층 생계지원의 일환으로 최근 4개년(2021~2024년) 동안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

이 이루어져, 4년 평균 375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최소 1,000억 원 상당의 용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집행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21~2024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1.1.12.)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20,000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용자확대로 생계보호 강화
국회의결 (‘21.3.25.)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50,000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상황 악화로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2.1.28.)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2,794	용자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증액을 위한 용자금 감액
자체변경 (‘22.8.9.)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25,000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2.12.8.)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7,799	시중 금리인상 등 지속적 경제악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3.9.27.)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20,000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체변경 (‘24.7.17.)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30,000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로 저소득 근로자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확대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내실있는 융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19년 생활안정자금(융자)의 대위변제가 3,234건으로 131억 1,900만원의 대위변제금이 지출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이후의 융자 사업 확대 영향으로 2023년 대위변제 건수는 4,143건으로 183억 4,600만원의 대위변제금이 지출되었고, 2024년의 경우 3,876건의 대위변제에 대한 163억 100만원의 대위변제금 지출이 이루어졌음.

[2019~2024년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위변제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위변제	건수	3,234	2,483	2,488	3,696	4,143	3,876
	금액	13,119	10,221	13,176	17,432	18,346	16,301

* 자료: 고용노동부

융자 부실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사업비 증액과 동시에 내실있는 융자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신용보증대위변제(근로복지진흥기금, 3064-308)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신용보증대위변제’(2002년~, 직접)는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한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⁴²⁾ 및 제26조⁴³⁾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2002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예산 316억 5,900만원 대비 329억 5,200만원(104.1%) 증액된 646억 1,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신용보증대위변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집행액	당초 (A)	제1회 변경안(B)		
■ 신용보증대위변제	30,195	30,195	31,659	64,611	32,952	104.1

* 자료: 고용노동부

42)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용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3)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용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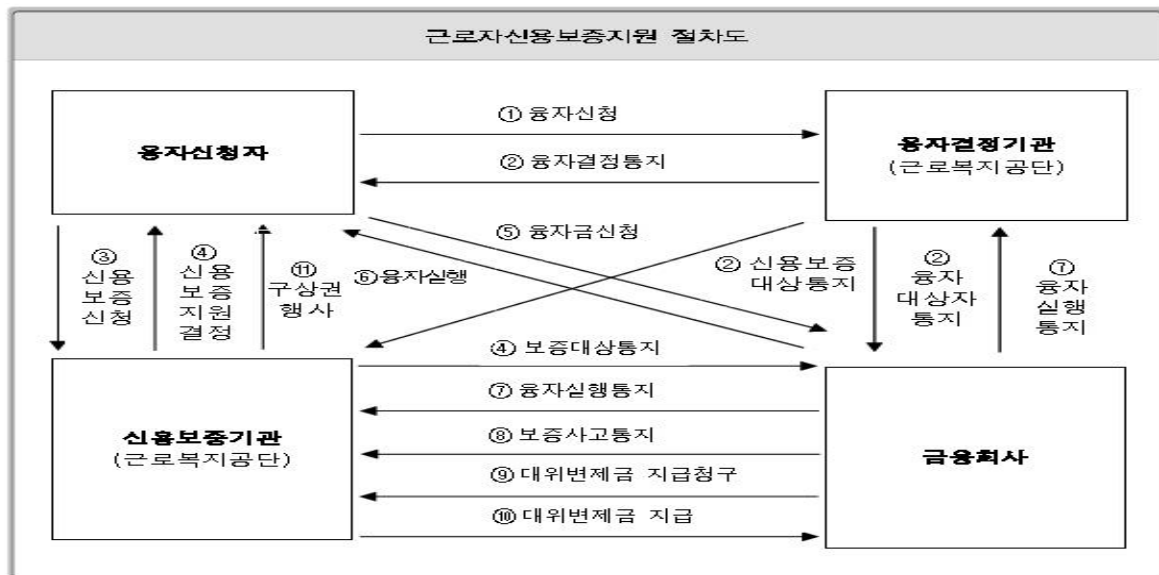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동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고용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회사를 통한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신용보증을 통한 용자 실행 후, 용자를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용자금 회수가 곤란하여 원리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됨.

[신용보증지원 절차도]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통해 i)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ii)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융자, iii)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⁴⁴⁾ 신용보증지원 한도는 1명당 2,000만원(단, 고용위기지

44)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보증대상 용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대상 용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1인당 3,000만원,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신용보증 한도액은 2025.3.1.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1인당
3,000만원으로 한시 상향)으로 제한하고 있음.⁴⁵⁾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취약계층의 정상 금융
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계획액을 당초 계
획액 대비 329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이는 2024년 12월말 기
준 연체액 중 2025년 중 대위변제 청구기한이 도래하는 금액(579억 200
만원), 2024년 미지급액(188억 900만원) 중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위변제 예방액(130억 6,100만원)⁴⁶⁾을 제외했을 때, 총
636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년 동 세부사업 중 신
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위한 당초 계획액은 306억 9,800만원⁴⁷⁾으로 329
억 5,200만원이 부족한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증액 편성된 것임.

-
1. 법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
자사업
 3.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5. 삭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
 7.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9.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45)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0조(보증한도) ① 신용보
증지원 한도액은 각 융자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보증한도
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1명당 보증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46) 2,721건(2024년 사고해제건수 2,284 × 노력도15% × 조정 계수 3.6%) × 4.8백만원 (2024년
건당 평균대위변제액*) =13,061백만원
* 29,555백만원('24년 대위변제액) ÷ 6,138건(2024년 대위변제건수)
- 47) 2025년 당초 계획액은 반환금 및 손실금(710-03목)으로 신용보증대위변제 306억 9,800만원, 신
용보증료환급 9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있음.

〈 신용보증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회수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 24,057명에서 2024년 36,608명으로 52.2% 증가하였음. 신용보증지원액은 2019년 1,503억원 상당이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융자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3년까지 3,000억원 내외로 나타났고, 2024년은 1,929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이루어졌음.

[연도별 신용보증지원 실적 및 대위변제액]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용보증지원 인원	24,057	50,322	49,614	54,704	51,289	36,608
신용보증지원액	150,258	322,090	352,157	309,078	306,807	192,945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⁴⁸⁾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증지원 후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

대위변제건수는 2019년 5,08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 6,138건으로

48)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증가(20.8%)하였고, 대위변제규모도 증가하여 2019년 191억 4,600만원에서 2024년 295억 5,500만원으로 증가(54.4%)하였음.

[연도별 대위변제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위변제액 (당해연도)	19,146	15,451	18,418	27,711	33,035	29,555
대위변제건수 (당해연도)	5,080	3,827	3,983	5,415	6,795	6,138
누적 대위변제액	199,698	215,149	233,567	261,278	294,313	323,869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이후 증가되었던 용자 규모와 최근의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증가로 인해, 2024년 12월말 기준 금융회사에서 회신한 연체액 규모를 감안하여 신용보증대위변제 추가 소요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상의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의 대위변제 건수·금액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과 관련하여, 대위변제금 확대에 따른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이후 용자 신청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금을 납부받고 있음. 그러나 2019~2024년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살펴보면, 누적 회수율이 2019년 38.3%에서

2024년 35.2%로 감소(△3.1%p)하고 있고, 융자규모가 증가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회수금액 (당해연도)	6,818	6,908	7,147	7,756	7,320	8,173
누적 회수액	76,521	83,429	90,576	98,332	105,652	113,825
누적 회수율	38.3	38.8	38.8	37.6	35.9	35.2

* 자료: 고용노동부

통상 융자 실행 이후 대위변제의 발생까지는 시차가 존재함을 고려한다면, 2020년 이후 이루어진 융자 규모 확대에 따라 향후 대위변제금 지급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실효성 확대 및 안정적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해 구상채권 회수율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추진하는 동시에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⁹⁾

49)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구상채권 집중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하면서 고액채권 회수·기관별 회수율 실적 평가·집행권원 확보 및 특수채권 실효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으로, 채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자발적 변제율 제고, 외부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 개인회생)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보재산 보전조치 후 근로여부 등 조사를 강화하는 보전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누적 회수율이 저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보건본부]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60-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1987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⁵⁰⁾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을 대상으로⁵¹⁾ 다음과 같이 의료·혼례·장례에 필요한 긴급자금과 차량구입·주택임차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 계획액 142억 9,900만원 대비 65억 6,000만원(45.9%) 증액된 208억 5,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수정	계획액 (A)	제1회 변경안(B)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4,299	14,264	14,299	20,859	6,560	45.9

* 자료: 고용노동부

50)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51)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5,052,353원) 이하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및 유족 등이 해당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용자종류	지원한도액
의료비	1,000만원
혼례비	1,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취업안정자금	1,000만원
차량구입비	1,500만원
주택이전비	1,500만원
자녀양육비	자녀 1명당 5백만원(가구당 최대 1,0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 기존 용자를 받은 산재근로자와의 형평 문제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대처와 사업목표에 충실한 사업 집행 필요 〉

이러한 증액은 지난 1월 관계부처합동으로 확정·발표한 2025년 경제 정책방향 중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인 취약 부문 맞춤형 지원 정책 중 노동약자 보호망 지속 확충을 위한 후속조치로,⁵²⁾ 한시적으로 용자 이율을 기존 1.25%에서 1.0%로 인하하고 13세 미만 자녀 양육 비용 신설하면서, 용자한도를 가구 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반영된 결과임.

52)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 1. 2, 관계부처합동), p.26

해당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좀더 용이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10개월이라는⁵³⁾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용자 이율을 인하하고(1.25%→1.0%) 용자 한도를 상향(2,000만원→3,000만원)하는 것은 다음의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①이율 측면에서 기존용자를 받은 산재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②기존 용자사업 시행과정에서 용자 한도 상향에 대한 뚜렷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술적 근거 없이 기존 용자 한도액(2,0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원을 상향하는 등 단순히 한도와 이율의 조정을 통하여 산재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더 많은 용자를 받도록 장려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비 촉진이라는 경제 효과 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증진’이라는 본연의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하게 설계된 정책인지 여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사업목표가 오롯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3) 용자 이율 인하 및 한도상향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